

서울특별시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(안) 심 사 보 고 서

2002. 9. 6.
행정 위원 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2년 8월 28일 영등포구청장 제출

나. 회 부 일 자 : 2002년 8월 28일 회부

다. 상 정 일 자 : 제90회(2002년도 제1차 정례회) 제4차 위원회(2002년 9월 6일)
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재무국장 홍성배)

가. 개정이유

- 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(2002. 4. 20)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일부 정비 보완코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의 경우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규정에 의하면 지정권자가 시장·도지사로 되어 있어 지정권자를 시장으로 함(안 제19조의2)
-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주택재개발사업지구내 구유지 매각대금 잔액에 대한 분할납부 이자를 연 5%에서 연4%로 함(안 제21조의2)
- 도시재개발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주택재개발사업지구안에 있는 “토지가 사유건물에 의하여 무단점유·사용되고 있는 경우에 변상금의 연체요율”을 “토지에 대한 변상금과 매각대금의 연체요율”로 함(안 제27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김홍수)

동 개정조례안은 본 조례 제19조의2제4호중 “구청장”을 “시장”으로 하고, 제21조의2(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에관한특례)중 주택재개발구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0조의3제2호의 특례규정에 의하여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5%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, 본 조례 제27조(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)의 연체요율중 주택재개발사업지구 안에 있는 공유토지가 사유건물에 의하여 무단 점유·사용되고 있는 “변상금의 연체요율에 한하여 10%로 한다”를 “변상금 및 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은 10%로 한다”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촉진하고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개정이라고 사료됨

4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